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리며, 매주 목요일에 주간입법동향을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 주요 법안 동향

법안 종류	키워드	주요 법안	주요 내용
발의안	기업	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법 제34조의3(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의 신설 및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는 내용 포함.
	공정거래	②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업자가 건설공사 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 재하도급 허용. 공정위의 승인을 얻어 재하도급을 하더라도 수급업자가 안전관리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
국회 계류안	IP	③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 기준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바꾸고, 최대 3%까지 과징금 부과.
공포 법령	중대재해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방문판매원 등 4개 직종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입법/행정 예고	ESG	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할당대상업체에게 배출권 할당에 있어 혜택을 부여 및 배출량 감소에 따른 배출권의 불이익 방지 등.

# 1. 발의

\*각 법률안 및 검토보고서 확인을 위해서는, 법률안 밑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1	 <p><b>김상희</b> (더불어민주당)</p>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국내에서 발생한 LTE, 5G, Wifi, Wibro의 총 트래픽은 17년 기준 3,702,202테라바이트(TB)에서 20년 기준 7,837,438테라바이트(TB)로 폭증하였고, 같은 추세로 올해는 8,948,535테라바이트(TB)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됨.</p> <p>이처럼 온라인 서비스가 사회 전반을 연결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인터넷 이용의 확산으로 플랫폼 서비스 및 디지털콘텐츠가 국민 생활의 필수요소로 자리 잡음에 따라 트래픽 발생량이 해마다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영상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p> <p>특히 국내 트래픽 발생 상위 10개 사이트의 국내외 사업자 비중 자료에 따르면 21년 2분기 기준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의 트래픽 발생 비중이 78.6%인 반면, 국내 부가통신사업자의 비중은 21.4%에 불과하여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상당수가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유발되고 있는 점이 확인됨. 이처럼 국내 인터넷 망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음에도 망 사용료 계약을 체결한 국내 사업자와 달리, 일부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는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고 서비스의 품질 유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조차 외면하고 있음.</p> <p>이에 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당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인터넷망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 신설 등).</p>	<p>이데일리 21.11.19. 김상희 부의장,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 발의</p> <p><a h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85926629247360&amp;mediaCodeNo=257&amp;OutLnkChk=Y">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85926629247360&amp;mediaCodeNo=257&amp;OutLnkChk=Y</a></p>	21.11.19. 제안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Z1J1G0Z0H6K1U5H1U1Q0C0P9P0F3](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Z1J1G0Z0H6K1U5H1U1Q0C0P9P0F3)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2	 <b>이종배</b> <b>(국민의힘)</b>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특정 건설현장에서 무리한 재하도급에 따라 단가를 낮추기 위해 무리한 방식으로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중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함.</li> </ul> 현행법령에서 하도급 거래에 관한 계약상의 불공정 문제를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상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보다 높은 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수급업자에게 전문적 기술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재하도급을 가능하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재하도급행위를 금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재하도급을 하더라도 수급업자가 안전관리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재하도급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의2 및 제3조의5 신설 등).	연합뉴스 21.11.12. "재하도급 제한 강화" 이종배 법률 개정안 발의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11112128700064?input=1195m">https://www.yna.co.kr/view/AKR20211112128700064?input=1195m</a>	<b>21.11.12</b> <b>제안</b>

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A1E1E1J1L21S5L0R3R0T1F9P7F1](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A1E1E1J1L21S5L0R3R0T1F9P7F1)

## 2. 국회 계류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3	정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이 온라인 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로 규정되어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간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li> <li>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안 제2조제7호의2 및 제25조의2 신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외에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을 이용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를 마련함.</li> <li>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경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하며,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 등을 정함.</li> </ol> </li> </ul> </li> </ul>	<p>한국경제 21.11.22. [이건호 칼럼] 개인정보법 '기업처벌법' 될라</p> <p><a href="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112262041">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112262041</a></p>	<p>21.09.28. 제안</p> <p>21.11.16. 상임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p> <p>21.11.23. 소위 상정/ 제안설명</p>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p>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방법 개선(안 제15조제1항제4호, 안 제15조제1항제7호 신설)</p> <p>1) 종전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함.</p> <p>2) 종전에는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여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p> <p>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국외 이전 중지 명령(안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 신설)</p> <p>3) 종전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보호 수준을 갖추었다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에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국외 이전의 요건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다양화 함.</p> <p>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p> <p>라.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안 제35조의2 신설)</p> <p>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전송 요구의 요건 등을 정함.</p> <p>마.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신설(안 제4조제6호 및 제37조의2 신설)</p> <p>정보주체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p>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p>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정비(현행 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15까지 삭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된 특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동일 행위에 동일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종전의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일반 규정으로 정비함.</p> <p>사.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제도 개선(안 제43조제3항, 제47조제3항·제4항, 안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p> <p>1) 분쟁조정 통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 참여하여야 하는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분쟁조정 당사자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할 경우 종전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함.</p> <p>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기구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p> <p>아. 과징금 규정 정비(안 제64조의2 신설)</p> <p>종전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p>		
			출처: <a href="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O2N1V009E2Y8Q1D8V2C5N4E9A0K8E2">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O2N1V009E2Y8Q1D8V2C5N4E9A0K8E2</a>		

### 3. 공포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4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p>■ 개정이유</p> <p>건설업 등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混在)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작업 시기·내용 등을 조정하도록 하고, 건설공사발주자가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하며,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게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180호, 2021.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 발생의 유형,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범위,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p> <p>■ 주요내용</p> <p>가. 관계수급인 등 작업 혼재에 대한 도급인의 작업 시기·내용 등 조정(제53조의2 신설)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거나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설비 등에 끼일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작업 시기·내용 등을 조정하도록 하여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 발생을 최소화함.</p>	<p>뉴스시스            21.11.18.            방문판매            등 4개직종            특수고용직도            '안전교육 의무화'</p> <p><a href="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18_0001655662&amp;clD=10201&amp;pID=10200">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18_0001655662&amp;clD=10201&amp;pID=10200</a></p>	21.11.19. 시행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p>나.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을 위한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범위(제55조의2 신설)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안전보건대장 기재 내용의 적정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범위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으로 정함.</p> <p>다. 안전·보건 조치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대(제67조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신설, 제68조) 안전·보건 조치 및 안전·보건 교육의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이나 방문점검원 등을 추가하여 산업 현장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p> <p>라.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보조·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금액 기준(제109조의2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 환수금액의 기준을 정함.</p> <p>마.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계약 시 전산시스템의 사용 근거 마련(별표 18 제2호나목 신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여 기술지도계약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p> <p>바.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별표 35 제4호바목 신설)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함.</p>		
			출처: <a href="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a>		

## 4. 입법/행정 예고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5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이유                      할당대상업체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참여 유도를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할당대상업체에게 배출권 할당에 있어 혜택을 부여하고, 배출량 감소에 따른 배출권의 불이익을 방지하자 함. 또한 배출량이 변동될 경우 당연 변동되는 추가 할당량 및 할당 취소량을 직권 정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li> <li>■ 주요내용                      가. 기존 할당대상업체 내부에서의 감축실적 외에 외부에서의 감축실적,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에 대해서도 감축실적으로 인정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7조, 별표 1, 별지 제26호)                      나. 계획기간에 대한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 작성 시, 할당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의 기준기간 명세서를 활용하여 할당량 결정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다. 기준기간 중 신설 시설이 가동률 증가로 인해 해당 이행연도 예상 배출량 대비 이행연도 배출량이 2배 이상 증가한 경우 증설 시설로 간주하여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li> </ul>		21.11.19. ~ 21.12.09.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p>라. 사업장에서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감축실적이 있는 경우 추가 할당 및 할당 취소 결정량 산정 시 배출량에 감축실적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15조, 제19조, 제24조, 제29조)</p> <p>마. 업체가 배출량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최종 인증배출량이 변경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업체의 이행연도 배출량을 기반으로 산정되는 추가 할당량과 할당 취소량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20조, 제30조)</p> <p>바. 추가 할당 신청 시 세부 관련 정보와 할당 취소 관련 연도별 취소량이 세부적으로 표출되어 제공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함(안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p> <p>출처:<a href="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111-0000868">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111-0000868</a></p>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 [매일경제][사설]기업을 절벽으로 밀고 공무원 배불리는 중대재해법(2021.11.23)

<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21/11/1089707/>

**주요내용** 내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 전·현직 공무원들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함. 기업의 법률 자문을 맡은 대형 로펌들이 애매모호한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전관 공무원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중대재해법은 누가 어떤 기준에 따라 책임져야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보니,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처벌 여부나 수위가 크게 달라짐. 그래서 산업안전 업무를 맡았던 전·현직 관료들을 채용하게돼, 기업을 벼랑 끝으로 모는 중대재해법이 공무원들의 배를 불려주고 있는 형태. 공무원 일자리만 늘리는 '전관복지법'이 될 수 있으므로 시행을 유예하고 다시 고쳐야함.

### [문화일보][사설]정부 해설서도 문제투성이, 중대재해법 전면 개정해야(2021.11.18)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111801073511000004>

**주요내용** 지난 1월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모호성과 과잉 처벌, 현장 실정과의 괴리 등 법규로서의 요건 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논란이 심각했음. 중대재해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이지만 해설서조차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함. 노동부는 "기업 스스로 가장 잘 알 것"이라고 하는 상황이니, 무더기 소송을 부르게 될 듯함. 산업안전법이 있는 만큼 중대재해법은 중복 처벌의 성격도 갖음.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최근 별도의 건설안전특별법을 추진 중임. 산재 사고는 법이 없어 발생하는 것이 아님에도 처벌법만 만들면 해결되리라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것. 전면적 개정이 시급하며 그때까지 시행도 재연기해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함.

## [경향신문][사설]'5인 미만' 이어 특고·플랫폼 노동자까지 뺀 중대재해법(2021.11.18)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111182029015>

**주요내용** 고용노동부가 17일 공개한 중대재해법 해설서에서 중대재해법 제3조(적용 범위)에 대해 정부가 플랫폼종사자 등은 제외한다고 해석하며 적용 범위가 더욱 축소됨. 전체 사업장의 7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약 25%를 차지하는데 여기에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조차 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함에 따라 사각지대는 더욱 넓어짐.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는 고용주와 피고용자 간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노동자성이 늘 논란이 되어왔는데 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는 플랫폼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지속적으로 확대 인정해가고 있지만 이런 흐름에 정부가 역행하는 중임. 최근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는 약 22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을 노동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청년 플랫폼 노동자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중대재해법을 방치해서는 안됨.

## [한국경제][사설]해설서도 '알아서 지키라'...중대재해법 연기가 답이다(2021.11.1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111761871>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정부가 법 해설서를 내놨지만 해설서가 나온 당일 업종별 주요 20개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발족하고 법안 개선 등의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그 불안감의 정도를 가늠케 함. 최고경영자(CEO) 이외에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O)를 뒀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 없이 'CSO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CEO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음'이라고 적시하여 CEO가 책임져야 한다는 건지, 둘 다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음.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예산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만큼 필요한 예산'이라고 두루뭉술하게 적었고,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 충실도' 관련 기준에 대해서는 '사업장 사정은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답함. 일각에서는 관료들이 퇴직용 낙하산 자리 마련을 위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옴. 법 시행을 최소 1년 이상 연기하고 법 조항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함.

# 담당 변호사 및 전문인력

## 입법전략센터



**차동언**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0  
E : decha@draju.com



**이승철**  
고문  
T : 02-3016-8706  
E : sclee@draju.com

## 기업부문



**안호봉**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74  
E : hbahn@draju.com

## 공정거래부문



**구상모**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49  
E : smkoo@draju.com

## IP 부문



**최종선**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88  
E : jschoi@draju.com

## 중대재해 자문그룹



**김영규**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3  
E : ykkim@draju.com

## ESG 자문그룹



**이상봉**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76  
E : sblee@draju.com